

	학과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칙(안)		규정번호	3-3-30	
			제정일자	2019.05.01.	
	개정일자	-			
	개정번호	Ver.0	총페이지	2	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대학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학과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담당조직) 학과 신설 및 폐지 업무는 기획처에서 주관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학과 신설 및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.

1. 대학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
2. 대학 발전계획에 따른 대학 경쟁력 확보
3. 정부의 정책 및 조치결과 반영
4. 대학 재정의 효율적 운영

제4조(절차) 학과 신설 및 폐지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.

1. 학생 모집 및 산업체 인력 수급 전망 등에 대한 분석
2. 대상 학과 선정 및 계획 수립
3. (학과 폐지 시) 대상 학과 구성원의 의견수렴
4. 교무위원회 자문
5. 교수회 심의
6. 대학평의원회 심의
7. 총장 승인

제5조(대상 학과 선정기준) ① 학과의 신설은 학생 모집과 취업에 경쟁력이 있는 전략육성 분야로 하며, 인원은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배정한다.

② 폐지 대상 학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선정될 수 있다.

1. 신입생 충원율이 3년 연속 기관평가인증 기준 값의 80% 미만인 경우
2.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3년 연속 기관평가인증 기준 값의 80% 미만인 경우
(단, 신설 및 학제 변경 학과는 예외)
3. 학과가 자율적으로 원하는 경우

제6조(학과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) ① 폐지가 결정된 학과의 재적생에 대해서는 졸업 시 까지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,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.

② 폐지 학과 교원은 다른 학과로 소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 소속변경에 대한 심의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하며,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다.

1. 희망하는 학부(과)와의 전공 관련성, 교과목에 대한 강의능력
 2. 희망하는 학부(과)의 교원 및 학생 수, 교육과정 및 강의담당시간 편성 등
 3. 희망하는 학부(과) 소속 교원의 의견 등
- ③ 소속 변경 희망 교원에 대한 재교육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